

■ 광업법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5. 10. 1.>

광물의 생산실적(제33조 관련)

번 호	광 종	기준품위	생 산 량	비 고
1	석 탄 (토 상 흑 연 을 포함한다)		2,000톤	생산된 광산물의 품위가 기준품위와 다를 때에는 해당 기준품위로 환산하여 생산량을 산출한다.
2	철	(Fe 56%)	900톤	
3	연 · 아연	(Pb · Zn 50%)	120톤	
4	동	(Cu 25%)	130톤	
5	텅그스텐	(WO ₃ 70%)	2톤	
6	금	(Au 100%)	1.4킬로그램	
7	은	(Ag 100%)	44킬로그램	
8	고령토		600톤	
9	활석		300톤	
10	납석		1,500톤	
11	석회석		3,000톤	

비 고: 위 표에 정한 광종 외의 광물의 생산실적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